

세종시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기반구축』 3차년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단법인 바이오합성연구단은 지역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기반, 소재 지역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기업육성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위해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기반 구축 기업지원 '기술자문' 및 '기술컨설팅', '시제품 제작', '소재시험 분석', 인허가/인증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6월 14일

(재)바이오합성연구단 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기반구축 사업

□ 목 적 : 지역 내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개발 제품
기술자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한 기업사업화 지원

- (기술자문) : 제품개발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진단, 자문을 통해 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 (기술컨설팅) : 기업경영상 필요한 제품분석 및 시장수요 분석 등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기업의 사업화 역량 등을 강화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기술적 요소를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사업화 촉진
- (소재시험분석) : 제품 개발에 필요 성능에 기반한 시험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지원기업 전반적 기술력 향상을 도모함

□ 지원기간 및 공고일정(접수기간 연장)

- 공고일정 : 2022. 06. 14 ~ 접수완료시까지
- 접수기간 : 2022. 06. 14 ~ 접수완료시까지
- 선정평가 : 2022. 06월 중 ~ 6월말 별도공지
- 지원기간 : 협약일(2022. 06월중 ~ 2022. 10.(5개월))
- ※ 선정평가 및 지원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공고 세부내용

□ 지원유형 : 기술자문, 기술컨설팅, 시제품 제작, 소재시험 분석, 인허가/인증

지원유형	지원내용
기술자문	• 제품개발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진단, 자문을 통해 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 선행기술 분석,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량, 기술적 문제 자문 등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기술적 요소를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사업화 촉진 - 시제품 제작, 공정확립 등
소재시험분석	• 제품 개발에 필요 성능에 기반한 시험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지원기업 전반적 기술력 향상을 도모함 - 시험법 확립, 공인시험 성적서, 분석결과 보고서 등

※ '기술자문' 및 '기술컨설팅', '시제품 제작', '인허가/인증', '소재시험분석' 교차지원이 가능하되 지원분야를 정확하게 명시

※ 기술컨설팅, 소재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인허가/인증은 사업기간 종료시 시험성적서 또는 분석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대상 : 세종 지역 內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관련 전후방 중소·중견기업

□ 지원방법 : 수혜기업 - 지원기관 - 공급기관(업) 매칭 지원

<공급기관(업) 역할 및 매칭방법>

- (주요역할) 지역기업의 지원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공급기관(업)
 - 기술자문, 기술컨설팅, 시제품제작, 소재시험분석, 인허가/인증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지역 내외 전문기관(업) 및 전문가와 바이오합성연구단 네트워크 전문가로 구성
- (매칭방법) 신청기업이 직접 선택 및 자율적 매칭
 - 선정평가 시 위원회에서 공급기관(업)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최종 확정
 -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여부 검토 및 정산 후 공급기관(업)에 지원금 지급(후 지급)

□ 지원 예산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기술자문) : 1社당 최대 3,000천원 이내 지원
- (시제품 제작) : 1社당 최대 25,000천원 이내 지원
- (소재시험분석) : 1社당 최대 2,5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2022. 06월중 ~ 2022. 10.(5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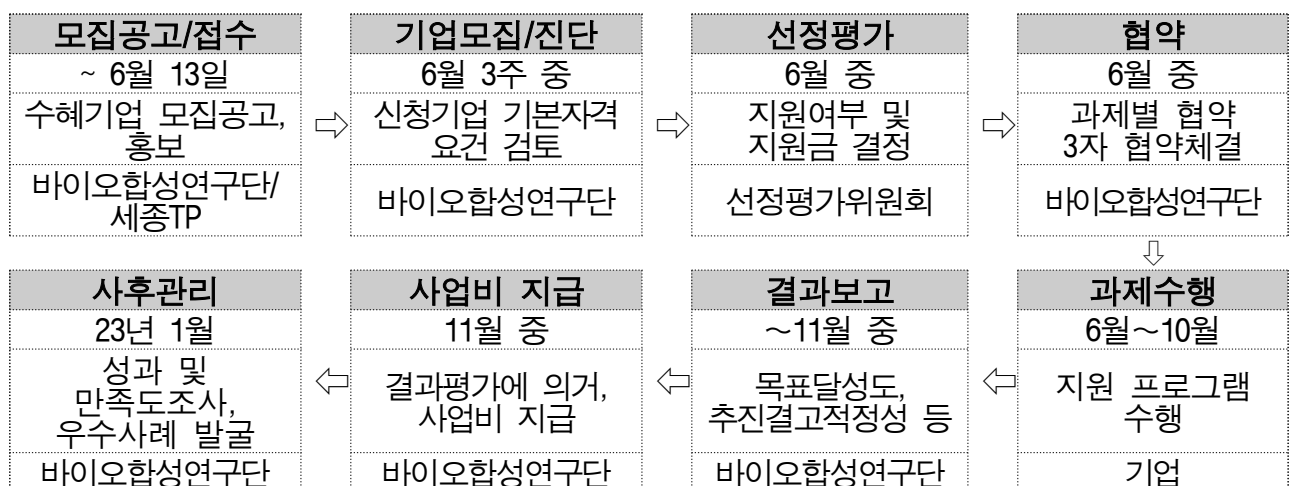
○ 기업부담금 : 기술자문 및 기술컨설팅, 시제품 제작, 소재시험분석 10% 동일

※ 예시 1) 총 사업비 11,000천원 = 정부지원금(10,000천원)+기업부담금(1,000천원)

※ 예시 2) 총 사업비 11,000천원 = VAT(1,100천원)는 신청기업에서 별도 부담

3

사업지원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4

접수방법

- 접수마감 : 2022년 6월 00일 월요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완료시까지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관련 제반서류 일체

- 접수방법 : 전자접수(e-mail : kimsg7596@guest.kaist.ac.kr 송부)
※ 전자접수시 모든 첨부 서류는 한 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

- 제출서류

구분	주요내용	부수
신청기업 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인감 및 직인 날인)	원본 1부
	②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신청기업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원본대조필) ※ 국세청발행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해당기간 재무제표 제출	1부
	④ 신청기업 지원자격 확인서(서명 및 직인날인)	원본 1부
	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자필서명)	원본 1부
	⑥ 참여확약서(서명 및 직인날인)	원본 1부
	⑦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서명 및 직인날인)	원본 1부
공급기업 서류	⑧ 공급기관(업) 기본정보(서명 및 직인날인)	원본 1부
	⑨ 공급기관(업)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⑩ 세부견적서 원본	원본 1부
	⑪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자필서명)	원본 1부

※ 공급기업이 복수일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급기업별 서류 제출 필수

※ 신청기업 지원자격 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참여확약서, 중복금지 확약서 등의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5

평가 및 선정방법

- 대면평가 : 접수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대면평가 진행
 - 대면평가 : 기업당 총 30분(기업발표 10 / 질의응답 20분)
 - 기업발표 10분 : 기업소개 2분, 과제발표 8분
 - 당락기준 : 종합점수 60점(최저/최고점 제외)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면평가 또는 실시간 화상 평가 및 서면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최저/최고점수를 포함한 총점 고득점 과제를 선정

□ 선정기준

평가항목	내용
사업내용 적격평가	• 사업 필요성 및 적정성 - 기술자문 및 시제품 제작 등 지원 필요성 - 기업의 문제해결을 통한 애로해소 적정성
	• 계획수립의 적정성 - 기술 및 시장 사전조사 등 사업 준비사항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신청기업의 사업화 역량 - 지원제품(기술)의 사업화 관련 이력 - 공급기관(업) 전문성 및 매칭의 적정성
	• 지원내용의 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성과목표 대비 결과물(Outcome)의 구체적 목표 - 고용창출 및 매출증대 등 기대효과

6

유의사항

□ 지원금 : 전체사업비의 10% 현금을 기업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사업비 구성의 예

<사업비 구성 예 : 10,000천원 지원 받았을 경우>

- A회사는 00분야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 받고자 신청, 지원금 10,000천원 선정되었다.
- 바이오합성연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 : 10,000천원(지원금)(A)
- 기업부담금(지원금의 10%) : 1,000천원(B)
- 부가가치세(VAT) : 총사업비(A+B)의 10%, 1,100천원
- > 바이오합성연구단 지급 금액(10,000천원),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2,100천원)
- > 세 전 총사업비 10,000천원
- 세 후 총사업비 12,100천원(부가세 포함된 세금계산서 금액)

□ 지원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7

문의처

□ 담당자 : (재)바이오합성연구단 김수길 팀장

□ 연락처 : 042-350-8725 / kimg7596@guest.kaist.ac.kr